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9. 2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오오라	00.3.29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	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음 -1차 출석통지: 22.6.22. -2차 출석통지: 22.7.7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, 3년간 재참여 제한	수취인부재, 이사감	하남시 신평로 42, 1502호

4. 공고기간 : 2022.9.21. ~ 2022.10.5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김연진(Tel. 031-730-70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